

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곽영학

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이옥규 의원 등 7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19년 8월 13일

○ 회부일자 : 2019년 8월 14일

3. 제안이유

-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단원과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하고, 퇴직시기를 정년이 1월에서 6월인 경우 6월 30일로, 7월에서 12월인 경우 12월 31일로 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정년(안 제9조제3항) - 정년을 60세로 함
- 퇴직시기(안 제9조제4항)
 - 정년이 1월에서 6월인 경우 6월 30일
 - 정년이 7월에서 12월인 경우 12월 31일
-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(안 제11조제8항)
 - 문화예술과장 → 문화예술산업과장

5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단원과 직원의 정년을 만58세에서 60세로 하는 것임.
-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제19조 제1항을 살펴보면 “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.”라고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,
 - 법령에서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그 상한연령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.
 -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노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의학발달로 평균수명이 80세에서 100세까지 연장되는 현상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획일화 하여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, 이것이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연령차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됨.
- 향후 충청북도는 이 조례 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나 정책에서도 근로자 정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.

붙임: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